

# 2019년 보건소 자체종합감사 결과

## I 감사 개요

### 1. 감사목적

-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.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.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
- 수입, 지출,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

### 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보건소
- 감사기간 : 2019. 10. 23 ~ 2019. 10. 25(3일간)
- 대상기간 : 2017. 10. 1 ~ 2019. 10. 22(2개년)
- 감사자 : 기획감사실장 외 4인

### 3. 감사중점사항

- 군정 주요사업 추진 및 지시사항 처리현황
- 세출예산 집행상황 및 주요물품 취득 현황
- 세입 및 각종 공사추진 실태
- 시설물관리 및 물품관리여부 등
- 당직의료기관 운영실태 및 보건증 발급현황

#### 4. 주요위반사항 요약

분야별	제 목	주 요 위 반 사 항
<b>세출분야</b>	<b>공무직근로자 피복비 지급 부적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비의 경우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(작업복)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, 소속공무원 외의 자에게는 해당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 할 수 없으며 현업 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(101-03)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,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금연지원서비스 전문요원(공무직)의 피복을 구매하면서 201-01(사무관리비) 피복비 과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/li> <li>●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금연지원서비스 전문요원(공무직)의 피복을 구매하면서 201-01(사무관리비) 피복비 과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 style="color: blue; margin-top: 10px;">【영암군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(행안부 예규 제75호)】</p>
	<b>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국내(근무지외) 출장여비 지급 부적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르면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대상자는 공무원(청경 등)으로 한정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무직(무기계약직)의 출장 여비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</li> </ul>

분야별	제 목	주 요 위 반 사 항
<p><b>세출분야</b></p>		<p>보수(101-03)로,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등보수(101-04)로 편성·집행해야 함에도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보건소에서는 공무원 국내출장(202-01)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출장 여비를 지급하였음.</li> </ul> <p>【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】</p>
	<p><b>급량비(201-01) 지급 부적절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량비의 경우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상 정규 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류 후 근무하는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외에는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 한해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 또한 급식을 지급시에는 1인당 1식 8,000원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</li> <li>● 보건소에서는 생물테러 모의훈련 사전모의 회의시 급량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하였으며, 생물테러 훈련에 따른 급량비의 경우 비상훈련에 따른 급식으로 지급은 가능하나 급량비의 경우 지급대상을 내부공무원으로 함이 타당하며 관계기관(경찰,소방, 군부대 등)근무자 23명에 대해</li> </ul>

분야별	제 목	주 요 위 반 사 항
<p><b>세출분야</b></p>		<p>급량비를 지급하였으며, 지급금액 또한 1인당 8,000원을 초과하는 1인당 19,280원가량을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. 또한, 결핵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 지급 2건에 대해서 정규근무시간 중 급식임에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.</p> <p><b>【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】</b></p>
	<p><b>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「2017~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」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법령·조례·규칙·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, 또한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제6조에 정한 “세출예산 성질별 분류”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나,</li> <li>● 보건소에서는 사무관리비(201-01) 17건 11,791,270원 중 인건비(101-03)로 1건 2,191,670원, 공공운영비(201-02) 11건 7,422,600원, 자산및물품취득비(405-01) 5건 2,177,000원으로, 지출함이 타당함에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.</li> </ul> <p><b>【「2017~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제6조】</b></p>

분야별	제 목	주 요 위 반 사 항
<b>세출분야</b>	<b>정부수입인지 및 전라남도지역개발 공채 과다징구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「인지세법」 제3조(과세문서 및 세액)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“과세문서”라 한다) 및 세액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3호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0,000원을 인지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8조(납부)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,</li> <li>● 또한, 「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“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청구금액의 2.5%, 물품의 경우 1.5%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(공채매출액 산정결과 1건당 5,000원 미만을 버리고 5,000원 단위로 계산)하여야 함에도</li> <li>● 보건소에서는 2018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입인지 20,000원을 미 징구 하였고, 또한 2018년 금연사업 홍보용 조끼 구입 외 2건의 물품을 구입 하면서 거래 대상자로부터 공채를 과다 징구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 style="color: blue; font-weight: bold;">【 「인지세법」 제3조, 「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제1항 및 제10조 】</p>